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7. 3. 26.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3. 26)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배 상필)

가.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하향 조정 (안 제6조제3항)
 -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조정
- 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안 제9조제2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재무보고서를 구의회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12조의2)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안섭)

-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제3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제2호는 기금관리기본법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다른 “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 안 제12조와 12조의2는 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2조와 중복된 부분은 가능한 제외하고 “기금운용계획” 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修正案 要旨

- 제6조의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행정국장, 총무과장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청사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현행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 제12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현행과 같이 하고
- 제6조 제3항의 “행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총무과장”은 “행정국장”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의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을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하고
- 제9조 제2호의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 안 제 12조, 제12조의 2를 삭제하고,
- 현행 제12조 제1항의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호
----------	-----------

제안년월일 : 2007. 3. 26 .

제안자 : 윤준용 위원

1. 수정 이유

- 제6조의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행정국장, 총무과장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을 청사건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현행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 제12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음.

2. 주요 골자

- 제6조 제3항의 “행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총무과장”은 “행정국장”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의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을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하고
- 현행 제12조 제1항의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운용·관리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략) 2. 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3.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국장 ----- 총무과장 -----. 1. (현행과 같음) 2.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 3. ----- 자 ④----- 총무담당주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3. 기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용계획</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u></p> <p>3.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 -----.</p> <p>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u></p> <p>2. <u>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3. <u>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u></p> <p>4. <u>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u></p> <p>5. <u>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삭 제> (현행)</p> <p>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5.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p> <p>②기금운용관은 <u>행정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소관업무 담당주사</u>로 한다.</p> <p>③<u>지방재정법</u>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총무과장</u> ----- <u>총무담당주사</u>-----.</p> <p>③「<u>지방재정법</u>」----- -----.</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u>구청장</u>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기금운용계획</u>을 수립하여야 하며,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기금의 결산보고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u>구청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기금운용계획서</u>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u>기금결산보고서</u>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u>세입·세출예산안</u> 또는 <u>결산서</u>와 함께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u>구청장</u>은 회계연도마다 <u>기금운용계획</u>을 수립하여야 하며 <u>기금운용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u>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u></p> <p>2. <u>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u></p> <p>3. <u>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u>구청장</u>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u>기금운용계획</u>을 수립하여 <u>세입·세출예산안</u>과 함께 <u>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u>구청장</u>은 매 회계연도마다 <u>출납폐쇄</u> 후 80일 이내에 <u>기금결산보고서</u>를 작성하여 <u>기금운용 성과분석</u>, <u>재무보고서</u> 및 <u>세입·세출결산서</u>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u>구의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u>매 회계연도마다</u>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미리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u> 다만, <u>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신 설〉</p>	<p>제12조의2(기금의 결산) <u>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 제〉 제12조제2항으로 조정</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하향 조정 (안 제6조제3항)
 -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조정
- 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안 제9조제2항)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재무 보고서를 구의회 제출하도록 개정 (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3. 5. ~ 3. 15.)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관리·운용”을 “운용·관리”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총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2.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3.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제2항중 “행정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총무 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다음에 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u>관리 운용</u>한다.</p> <p>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p> <p style="text-align: center;">----- <u>운용 · 관리</u>-----.</p> <p>②-----</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u>부구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행정국장</u>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p> <p>2. <u>도시관리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u></p> <p>3. 기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u>위촉한 자로 한다.</u></p> <p>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소관업무 담당주사</u>가 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p> <p>②-----</p> <p>③----- <u>행정국장</u> -----</p> <p><u>총무과장</u> -----</p> <p>1. -----</p> <p>2. <u>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u></p> <p>3. -----</p> <p style="text-align: right;">----- <u>위촉한 자</u></p> <p>④-----</p> <p style="text-align: center;">----- <u>총무담당주사</u>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금운용계획</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p> <p>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 -----.</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4.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p> <p>5.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p> <p>②기금운용관은 행정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p> <p>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총무과장 -----, ----- 총무담당주사 -----.</p> <p>③「지방재정법」----- -----.</p>
<p>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p> <p>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p> <p>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p> <p>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 설>	<p>제12조2(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